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KCAB
대한상사중재원

Contents



1	중재는 어떤 제도인가요?	4
2	중재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7
3	중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4	중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3
5	자주하는 질문	17
6	중재원의 다른 분쟁해결 서비스	21



01

중재는 어떤 제도인가요?



중재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중재합의)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판정

분쟁의 최종 해결 (강제집행 보장)



중재의 특징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중재가 적합한 분야

-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IT, 지식재산권 등)
-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2017. 12. 19.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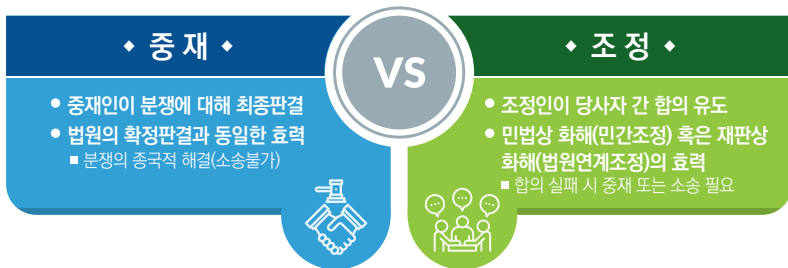
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재와 소송은 법적구속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판사가 아닌 당사자가 선정한 민간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을 내린다는 점, 단심으로 종결된다는 점 등에서 소송과 다릅니다.



조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정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시 중재신청 또는 소송 제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중재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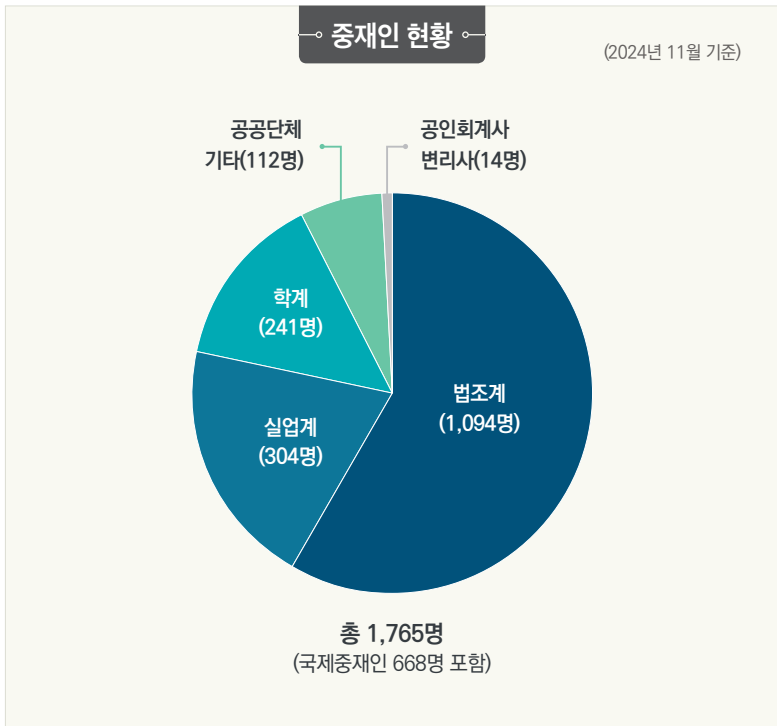
02

중재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전문가가 판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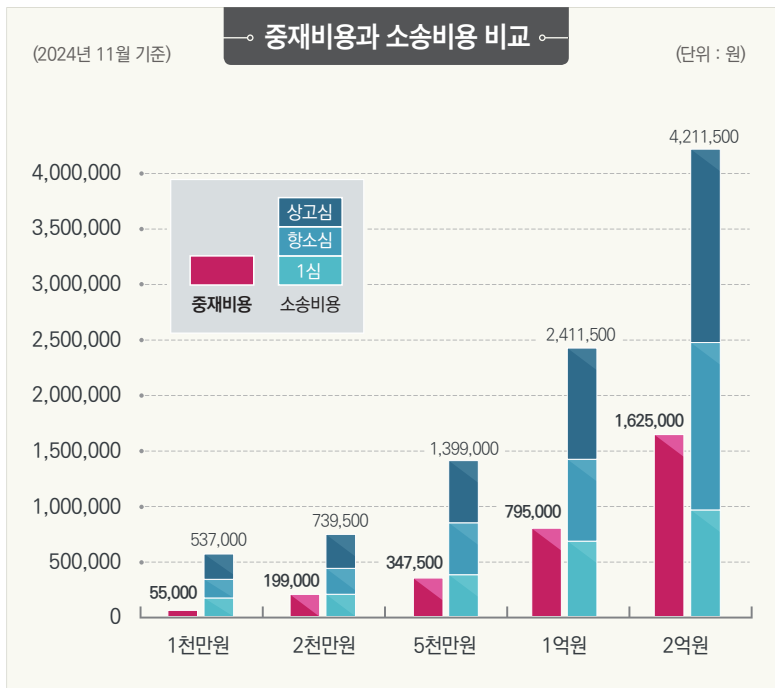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해당 분야의 특성 및 상관습을 고려한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므로 감정인 선정에 따른 별도의 감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인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중재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직접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단심제로 종료되는 중재의 특성상 신속한 해결을 통해 직·간접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중재 / 소송
비용 내역

- 중재비용 : 관리요금(부가가치세 포함) 및 중재인 수당
- 소송비용 : 인지액 및 송달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5년 기준)

중재소요기간 **평균 약 250일**
 국내중재 약 230일 | 국제중재 약 370일 소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효력이 보장됩니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 : 2024년 11월 기준 172개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충분한 진술기회 및 기업 비밀을 보장합니다.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을 내리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 기업 또는 개인신용도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3

중재를 이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서 안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재합의는 사전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규정해 두는 방식(사전 중재합의)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식(사후 중재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에 미리 계약서 상의 한 조항으로 중재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원활한 사후 중재합의 성립(합의서 및 공문방식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서는 거래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중재 합의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 중재합의서



중재합의 예시

◆ 국내중재의 경우 ◆

▶ 사전 중재합의(계약서에 중재조항 삽입)

[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사후 중재합의(분쟁 발생 이후 합의)

[합의서작성방식](다음 문구 삽입)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다.

(이후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

[공문방식]

해당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고 받는 방식



◆ 국제중재의 경우 ◆

▶ 사전 중재합의(계약서에 중재조항 삽입)

[중재조항]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 사후 중재합의(분쟁 발생 이후 합의)

We, the undersigned parties, hereby agree that the following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CAB [brief description of the dispute]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 알아두세요!

정부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권고하는 각종 표준 계약서에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재법상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을 가리키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04

중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내 중재 진행 절차 ◆

중재합의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신청 가능



중재신청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 예납
- 중재절차 개시



중재판정부 구성

- 별도합의 또는 신청금액(5억원 기준)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증거 조사(필요 시 감정·검증 실시)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 통상 2 ~ 3회 개최(신속절차는 1회 원칙)



중재판정(화해판정)

- 중재인이 최종판정
- 당사자합의 시 화해판정(화해권고안 송부 가능)
- 중재판정 및 화해판정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의미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시에는 소정의 중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중재인이란?

- 중재절차 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되어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 분야 1,7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갖추고 중재인 선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쟁분야의 전문가가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분쟁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원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양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 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재신청 절차

- 관련 서류 제출
 -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제출부수는 3부 또는 5부(신청금액 5억원 기준)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서 **주요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중재비용 예납

◆ 중재비용 예시 ◆

(단위 : 천원)

신청금액	중재비용(국내)		중재비용(국제)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1천만원	55	0	55	400
2천만원	99	100	99	400
5천만원	248	100	248	400
1억원	495	300	495	1,100
2억원	825	800	825	1,850
5억원	3,630	2,620	4,730	10,500
10억원	6,380	3,320	7,480	18,750
20억원	11,880	4,000	12,980	25,000
50억원	28,380	5,950	29,480	43,750
100억원	42,130	7,700	43,230	49,750
200억원	64,130	8,850	65,230	56,000
500억원	130,130	12,300	131,230	74,750
1,000억원	165,000	15,800	166,100	96,000
신청금액 없음	1,100	1,000	3,300	1,500

- 중재인 1인 기준임(3인 판정부의 경우 중재인 수당 추가)
- 관리요금 내 부가가치세 포함
- 중재비용 부담자, 부담비율(부담금액)은 중재판정 시 최종결정됨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서 구체적인 중재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속절차

국내사건 기준 신청금액 1억원 이하(별도합의도 가능) 사건은 간소화 된 신속 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속절차의 특징 ◆

구 분	국내중재	국제중재
요 건	별도의 합의 혹은 1억원 이하 사건	별도의 합의 혹은 5억원 이하 사건
중 재 인 선 정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 1인 선정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심리방법	1회 구술심리 원칙	1회 구술심리 원칙, 단, 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 원칙
판정기간	중재판정부가 구성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판정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 뉴욕협약이란?(New York Convention) ◆

- ▶ 정식명칭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외의 국가영토 내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체결한 다자간 국제조약
- ▶ 2024년 11월 기준 172개국 가입(우리나라는 1973. 2. 8. 가입)

05

자주하는 질문



Q 대한상사중재원은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합니까?

- ☑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적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중재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가 있으면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개정 중재법에서는 그 서면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①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②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를 모두 서면 중재합의로 봅니다.

Q 중재합의는 어떻게 합니까?

- ☑ 계약서상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중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9쪽 참조).

Q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 민사상 또는 상사거래 상의 거의 모든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 건설, 부동산, 물류, 금융 및 보험, 해운, 노동, 엔터테인먼트, 합작투자 등의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행정, 비송, 가사 사건 등은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하여야만 합니까?

-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공문, 이메일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 원만한 대화가 어렵거나, 불신감이 증대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에 중재조항의 형태로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Q 중재는 소송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 아닙니다.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시 소송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Q 중재신청을 할 때에 중재 비용은 누가 예납합니까?

- 국내중재의 경우 중재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반분하여 예납합니다.



Q 중재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 ☑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비용이 결정되며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및 중재인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중재규칙 내 별표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3쪽 참조).

Q 중재인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 중재원에서는 매년 1회 대외적으로 신망이 높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중재인 후보자의 신청서(이력서 또는 경력서류)에 대하여 중재인 위촉 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을 임기 3년의 중재인으로 위촉합니다. 구체적인 중재인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Q 중재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까?

- ☑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다툼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중재조항이 있는 사건이 법원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그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있다는 방소항변(본안전 항변)을 주장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 이는 반드시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하기 전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이후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Q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 재심이 가능합니까?

- ☑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불복,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재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중재합의나 중재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한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Q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 ☑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또는 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면?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06

중재원의 다른 분쟁해결 서비스



알 선

- 각종 민·상사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 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 알선은 비용이 들지 않고, 당사자 간의 비밀을 보장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거래 관계를 지속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성공률(중재합의율 포함)은 50 ~ 60% 입니다.

◆ 이럴 때 알선을 이용하세요 ◆

- ▶ 중재합의와 상관없이 각종 민·상사 분쟁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 가능
- ▶ 무료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소송·중재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
- ▶ 분쟁금액이 소액이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 알선 신청 방법 ◆

- ▶ 알선 신청서 작성(인적사항, 거래 및 분쟁발생 경위, 신청금액, 증빙자료 등)
-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비용 무료)
- ▶ 서울본원 전화 : (02)551-2000 / 팩스 : (02)551-2113
- ▶ 부산지부 전화 : (051)441-7032 / 팩스 : (051)441-7039



상 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 분야 : 계약서 작성안내, 중재·소송 등 각종 분쟁 해결 방법,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애로사항에 관한 자문 등
- 상담 신청 :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종합지원센터

전화 (02)551-2000 / 팩스 (02)551-2113



부산지부

전화 (051)441-7032 / 팩스 (051)441-7039





조정

조정은 분쟁해결 전문가인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절차입니다.

● 조정에서는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이 유용한 경우

- 민·상사 분쟁에서 소송·중재에 앞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엄격한 법적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거래관행이나 도의적 측면 등을 반영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당사자 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공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당사자 간에 조정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조정합의 : 당사자가 중재원에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
- 당사자가 소정의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팀

전화

(02)551-2010 /

팩스

(02)551-2113



남북상사중재

- 남북상사중재는 남북이 공동으로 중재기구(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역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통일부는 2007년 대한상사중재원을 우리 측 중재사무처리기구로 지정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북측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시 별도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의 가동 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구(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상사중재위원회 정상 가동 추진을 위한 정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북상사중재실을 운영하여 남북상사중재에 대한 대외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북상사중재실

전화 (02)551-2024 / 팩스 (02)551-2020





국제투자중재

- 투자자-국가간 투자중재(ISDS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이나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중재)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최근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투자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승인 하였으며('07. 5.),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는 국제투자분쟁 동향 파악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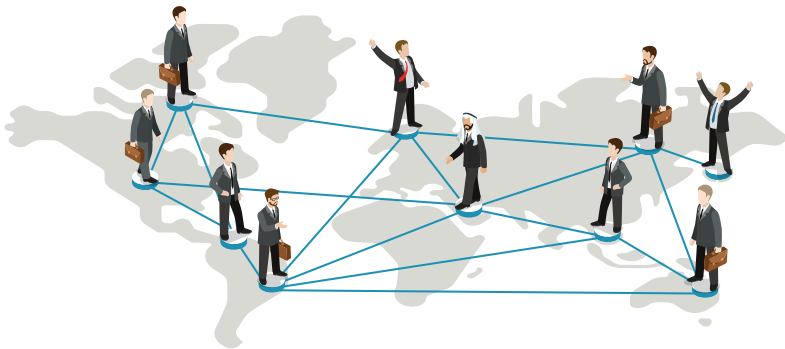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

전화

(02)551-2014 /

팩스

(02)551-2020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 사무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에서는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홍보,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분쟁 해결 지원,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력 및 OECD 보고 업무를 수행하며,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합니다.
- 한국NCP는 이의제기사건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별도로 각 사건마다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국내 유일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전문 기관으로 이해관계자의 중재, 조정 경험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을 NCP사무국으로 지정하여 당사자 의견 조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NCP 사무국

전화 (02)551-2046 / 팩스 (02)551-2020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본 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TEL. 02)551-2000 | FAX. 02)551-2113

부산지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50, 5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TEL. 051)441-7032 | FAX. 051)441-7039